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의  
기능성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

## 공동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한다)은 기능성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(이하 ‘본 협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기능성게임을 통한 게임의 교육적 활용 증진과 한중 기능성게임 교류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기능성게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약의 내용)**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류 협력하기로 하고,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협의를 거쳐 진행한다.

1. 교과 학습용 기능성게임의 공동개발과 보급
2. 위 기능성게임 공동개발과 보급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
3. 한중 기능성게임 교류협력 사업의 공동 추진
4. 기타 협약기관 간 공동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

**제3조(유효기간)**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, 종료일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4조(권리 · 의무의 승계)** 본 협약 체결 후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 ·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**제5조(비밀업수)** 본 협약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는 양 기관의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6조(실적관리와 홍보)**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한 사업 실적을 공유하며, 사업실적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시 사전에 상대방 기관에 통보하여 양 기관의 협력사업 문구를 반드시 명기한다.

**제7조(지적재산권 등의 귀속)** 본 협약을 통해 개발된 기능성게임의 저작권은 개발사가 보유하며, 양 기관은 사용권을 공동으로 보유한다.

**제8조(기술료의 징수)**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개발된 기능성게임 관련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이 때 기술료는 양 기관의 지원금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.

**제9조(기타)** 본 협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간에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12년 4월 30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홍상표

(代)제작지원본부장 이준근

경기콘텐츠진흥원

원장 성열홍

(代)콘텐츠산업본부장 김현영